

의안번호	2203817
의 퇴 인	이강일의원
회 답 일	2024. 10. 28.
추 계 번호	24D363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는 경우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¹⁾,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0만원, 2029년 1억 24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억 5,000만원(연평균 9,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안 제22조)	—	35	35	35	35	140	28
서면실태조사(안 제34조)	—	25	25	25	25	100	20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6조)	—	33.4	33.4	33.4	33.4	134	27
자문위원회(안 제54조)	—	9	9	9	9	36	7
온라인플랫폼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안 부칙 제2조)	40	—	—	—	—	40	8
합 계	40	102.4	102.4	102.4	102.4	450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법인으로 하고, 제4항에 따라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22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 등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34조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함	의무규정
4	안 제36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둠	의무규정
5	안 제4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54조(온라인플랫폼 부문 자문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7	안 부칙 제2조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조(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시장 조사)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장조사는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22조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	
3	안 제34조 (서면실태조사)	○	
4	안 제36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5	안 제45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미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54조(온라인플랫폼부 문자문위원회)	○	
7	안 부칙 제2조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부칙 제2조에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안 제22조)

- 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유형의 조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경쟁 제한행위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연간 3,500만원으로 추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에서 지원되는 ‘플랫폼 분야 등 제도 개선 연구용역’의 소요예산 3,500만원(2024년)을 준용하여 추정

[표 2] 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실태과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	35	35	35	35	1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서면실태조사 (안 제34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 매년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유사한 사례인 가맹분야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2,500만원²⁾과 동일하게 매년 2,500만원으로 추정함

[표 3]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서면실태조사	-	25	25	25	25	1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36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두는 경우 정부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황) 최근 3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및 연간 개최회의수, 예산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음

2)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500만원씩 편성되어 왔음. 2023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을 각각 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지적에 따라 대면조사 비용을 각각 5,000만원씩 증액한 결과임

[표 4] 6개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2021~2023년

(단위: 명, 건, 백만원)

	위원 수	조정신청사건 처리건			연간 전체회의 개최횟수			연간 소요예산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7	1,054	922	1,267	16	12	12	19	23	23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483	425	575	11	11	16	24	31	31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9	863	678	929	11	14	19	29	31	31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9	25	28	26	2	2	8	11	11	11
약관분쟁조정협의회	9	427	214	278	11	6	9	13	31	31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9	84	62	76	8	5	7	13	18	18
합 계	52	2,936	2,329	3,151	59	50	71	109	145	145
평 균	9	489	388	525	10	8	12	18	24	2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24.6)

- (위원 수)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수 (위원장 포함) 평균인 9명의 위원으로 가정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 40만원, 위원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기존의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전체회의는 10회(9명)로 가정하며, 소회의는 6회(3명)로 구분함
 - 안 제38조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로 구분하고 있음
 - 전체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10회로 가정함(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3개년 평균인 10회로 가정)
 - 소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6회로 가정함(2023년 기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5회,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간 소회의 7회의 평균인 6회로

가정)

- (소요비용) 협의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3,340만원으로 추정됨
 - (전체회의) 2,800만원(위원장 1명×40만원×10회 + 위원 8명×30만원×10회)
 - (소회의) 540만원(위원 3명×30만원×6회)

[표 5] 협의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전체회의	-	28.0	28.0	28.0	28.0	112
소회의	-	5.4	5.4	5.4	5.4	21.6
합 계	-	33.4	33.4	33.4	33.4	13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4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부문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연간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위원수에 회의수당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정함
 - (위원 수) 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회의수당) 회의수당은 20만원³⁾으로 가정함
 - (연간 회의 개최횟수)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유사 위원회의 연간 개최회의수를 참조하여 3회로 가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자문위원회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회의수 3회(2021.7~ 2022.6) 및 2회(2022.7~ 2023.6)를 참조하여 3회로 가정
 - (소요비용) 자문위원회 설치 시 소요비용은 연간 900만원(15명×20만원×3회)으로 추정됨

3)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0쪽)

[표 6]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자문위원회	-	9	9	9	9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온라인플랫폼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안 부칙 제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시장현황 기초자료 구축이나 방법론 연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첫해인 2025년에 4,000만원으로 추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사업의 내역사업인 ‘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기초자료 구축(부가통신 통계 자료 수집)’ 예산 4,000만원(2020년)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하게 추계

바.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협의회 설치, 자문위원회 설치,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억 5,000만원(연평균 9,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조사(안 제22조)	—	35	35	35	35	140	28
서면실태조사(안 제34조)	—	25	25	25	25	100	20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36조)	—	33.4	33.4	33.4	33.4	134	27
자문위원회(안 제54조)	—	9	9	9	9	36	7
온라인플랫폼시장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안 부칙 제2조)	40	—	—	—	—	40	8
합 계	40	102.4	102.4	102.4	102.4	450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